

북경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이행상황

鄭京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본고는 주요국가의 행동강령 이행상황을 최근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1995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189개국 정부대표, 유엔관련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힘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었다. 북경회의에서는 2000년까지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주요 분야에서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촉구하는 행동강령과 북경선언이 채택되었다. 행동강령은 여성과 빈곤문제를 포함한 12개 주요 관심분야에 관한 전략목표와 행동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자신이 경제, 정치,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까지 이러한 행동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개별국가의 행동계획 수립현황

□ 캐나다

- 연방정부는 “성인지적인 정책분석을 위한 지침(Guide to Gender-Based Policy Analysis)”을 발간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입법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 1996년도 센서스는 ① 지난 1주일 동안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 ② 무급 자

녀양육에 소요된 시간, ③ 노인들을 돌보는데 소요된 시간 등의 3가지의 무급노동과 관련된 질문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센서스에 무급노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무급노동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행해진 것이다.

□ 일본

-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민간단체전국협의회는 해산되고 대신 1996년 4월에 민간단체연합회(NGO Liaison Committee)가 구성되어 북경대회 결과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 행동강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00년을 향한 행동계획(New National Plan of Action Toward the Year 2000)의 실천 정도를 검토하고 성평등위원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국가차원의 행동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2000년을 향한 신국민행동계획안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 성평등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 고취
 -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의 교정
 - 학교교육의 개선과 사회교육의 촉진
 - 모성보호와 성적 존엄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고취
 - 동일기준에 기초한 여성과 남성의 적극적이고도 연대적인 사회참여 추구
 -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후원
 - 여성피고용인과 남성피고용인에 대한 동일한 기회제공과 동일대우의 촉진
 - 농·임·어업종사 여성에 대한 지원
 - 여성과 남성의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에의 적극적이고도 연대적인 참여 후원
 - 여성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조건을 개선
 - 평생교육기회의 증진과 취업능력개발 정책의 촉진
 -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의 증진
 - 다양한 직업에서의 여성의 취업조건 증진
 - 여성노인복지의 증진
 - 소득보장 강화

- 복지서비스 강화
 - 보건서비스와 사회참여 증진
 - 편모와 같은 특수한 집단의 여성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
- 국제협력과 평화에의 기여증진
- 여성의 국제협력 증진
 - 여성의 평화에의 기여 증진
- 경제계획청 산하의 경제연구소에 센서스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의 규모를 산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전담하는 연구팀이 구성되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56호 권고(가족부양책임은 지는 남녀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에 관한 조약)가 1996년 6월 9일부터 비준되어 실시되고 있다.
 - 1999년 4월부터 새로운 가족간호휴가법이 시행될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의 육아휴직법을 개정하여 가족간호휴가법을 마련하였다. 이는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간호를 해야 하는 남녀노동자에게 휴가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에 의하면 피고용자는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성원을 돌보기 위해 3개월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중의 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다.
 - 여성이 토지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이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농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개선안에 의해서 여성이 1996년 4월부터는 토지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프랑스

- 프랑스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UNDP의 1996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남녀평등지수(GMI)는 8위이지만 여성권한지표(GEM)는 40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여성의 의회진출률(5.9%)이 가장 낮은 국가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낮다(스웨덴 40.4%; 덴마크 33.0%; 노르웨이 39.4%; 독일 25.5%; 영국 7.8%; 프랑스 5.9%). 따라서 행동강령의 12개 관심분야중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집중적인 정책적인 관심이 두어지고 있다.
- 총리 직속기구인 ‘남녀의 정치평등에 관한 위원회’는 1997년 1월 15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회내 남녀 균등제(남녀가 똑같은 비율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나 여성쿼터제(의회 의석의 일정 비율을 정해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안)를

그 실천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총리는 이 두가지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1개월간의 국회논의와 공개토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영국

- 북경대회 직후 영국정부는 행동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인 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민간단체대표로부터 어떻게 정부가 계획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교육과 고용청의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 민간단체의 주요주장은 다음과 같다.
 - 빈곤: 많은 노동자들이 주급 58파운드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고, 법적인 질병수당이나 출산휴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연금각출액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이 공평하고 적절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급부와 세계체계를 재점검하고 조정하며 통합하는 노력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무급노동의 적절한 평가: 간호와 보육자의 노동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급노동의 측정하고 평가하는 작업에서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급노동의 측정과 평가는 남자들로 하여금 가족생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일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를 갖도록 해줄 것이다.
 - 정부는 구체적으로 ① 무급노동에 대한 항목을 다음 센서스와 일반가구조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② 가정에서 수행되는 무급노동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시간이용 조사를 실시하고, ③ 무급노동이 연금, 혜택, 취업권리 등에 갖고 있는 영향을 남녀별로 측정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일과 가정생활에서 요구되는 경쟁적인 요구들이 여성의 취업과 승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민간단체는 정부에게 고용자들로 하여금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가족친화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하도록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건강: 여성노인들이 현행의 보건정책하에서는 간과되어온 독특한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여성노인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적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환자를 위해서는 고도의 의사소통기술이 필요하다.
 -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① 6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유방암,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을 하며, ② 위험군인 여성들에게 골다공증(osteoporosis)검진을 하고,

③ 폐경기 클리닉을 도입하고, ④ 새로운 약의 임상실험에 여자노인들도 포함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여성은 우울증에 잘 빠지기 때문에 다른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여성들과 함께 폭넓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미국

○ 북경의회 행동강령과 미국정부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범정부 위원회인 ‘여성관련부처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보건복지청(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갖고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취업여성: 노동부의 여성국은 Honor Roll 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 이것은 고용자들과 제단체들로 하여금 여성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인 ① 임금과 혜택의 증진, ② 일과 가족의 균형, ③ 훈련과 승진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Honor Roll은 이미 주요 기업체, 중소기업, 주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600개로부터 입회서약을 받았다.
- 폭력: 10월이 가정폭력인지의 달로 선포되었고 다양한 지역 및 전국적인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집행 또는 형법관련 종사자를 훈련시키거나 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위한 협약(CEDAW): 클린턴 정부는 CEDAW의 기준을 인권조약 중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하였다.
- 경제적 안정: 재무성은 초미니기업체와 초미니조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뛰어난 초미니조직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신설하였다.
 - USAID의 초미니기업담당국은 저소득 여성기업인들이 신용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며, 또한 세계은행의 빈곤자 원조사문집단을 통하여 초미니기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더 나아가 초미니기업이 여성과 그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 여성인 기업체에 대한 관계부처합동위원회는 전국여성기업인연합회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기업체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건강: 보건사회청은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을 5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① 청소년임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② 유방암과 자궁암에 대한

새로운 정책, ③ 빈곤으로 인한 질환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④ 새로운 약의 임상실험에 여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⑤ 여성의 건강발언권에 대한 지속적인 수행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더불어 USAID는 저개발국가의 여성의 건강과 안녕의 증진을 위해 주요자원을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국제적인 발전: USAID는 여성의 정치참여 및 법적 권리에 관한 조항과 여아와 여성의 교육에 대한 조항을 상호보완적으로 실현하는 조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 교육: 교육청은 상이한 배경을 가진 특히 장애를 가지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소수 인종인 여아와 여성이 당면하는 장애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2. 지역적 노력

- 유럽연합체(EU) 산하 여성관련 조직체들의 연합인 유럽여성로비스트연합체(European Women's Lobby)는 유럽공동체가 실행해야 하는 민간단체의 행동강령초안을 마련하였다. 초안은 1994년에 비엔나회의에서 채택된 유럽과 북미 경제연합체(ECE)의 지역 행동강령에서 제시된 구체적 지침의 분석과 북경여성강령에 기초하여 마련되었다.
- 다음은 제기된 이슈들 중의 일부이다.
 - 취업에 있어서 공적인 영역 밖에서 여성이 획득한 기술이 '전문적인 자격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여성생애의 각 단계별 독특한 의료욕구에 따라서 건강관련자료가 분리되어야 한다.
 - 폐경, 관상동맥혈전심장병, 골다공증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 각 회원국가의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폭력에 대응하는 법체계 모델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유럽감시단체의 성립이 필요하다.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의 실시에 대한 유럽전역의 공통적인 지침을 발전시켜야 한다.
 - 여성과 남성에게 다양한 직업공유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유럽 조직체에서 채용대상자로 나이 3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조직체내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의사결정직으로의 승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시장에 늦게 진출하거나, 자녀양육 때문에 경력추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령에 기초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여야 한다.

[부 록] :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분야와 전략목표임.

1. 여성과 빈곤

- 1) 빈곤여성의 요구와 노력을 지원하도록 거시경제적 개발전략 검토·체택·유지
- 2)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도록 법률 및 행정관행 개선
- 3) 금융에 대한 여성의 접근 배려
- 4) 여성의 빈곤과 관련 성에 기초한 방법론 개발 및 연구수행

2. 여성의 교육과 훈련

- 1)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보장
- 2) 여성의 문맹퇴치
- 3) 직업훈련, 과학기술, 평생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증진
- 4) 비차별적인 교육훈련 개발
- 5) 교육개혁 이행에 관한 재원할당 및 모니터
- 6)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훈련 촉진

3. 여성과 보건

- 1) 생애주기를 통해 양질의 적절한 보건 및 관련정보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 증진
- 2) 여성보건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 강화
- 3) 성병, 에이즈 등 성 보건관련사업 착수
- 4) 여성보건에 관한 연구 촉진 및 정보유포
- 5) 여성보건관련 재원증대 및 후속 모니터 활동의 강화

4. 여성에 대한 폭력

- 1) 성폭력 예방종합대책 강구
- 2) 성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3) 여성인신매매근절 및 윤락행위,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 지원

5. 여성과 무력분쟁

- 1) 갈등해결과정에 여성의 참여증대 및 외국점령하 무력갈등 상황의 여성보호
- 2) 과도한 군사비 감축 및 군비통제
- 3) 갈등해결의 비폭력적 방법을 촉진하고 갈등 상황하 인권유린 사례 감소

- 4) 평화의 문화조성에 여성의 기여증진
- 5) 난민여성에게 보호지원 및 훈련제공
- 6) 식민지 및 비자치지역 여성에 대한 지원제공

6. 여성과 경제

- 1)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독립촉진
- 2) 자원, 고용, 시장, 무역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 촉진
- 3) 저소득여성에게 사업편의, 훈련 및 시장, 정보, 기술에 접근 제공
- 4) 여성의 경제적 역량 및 사업 네트워크 강화
- 5) 직업분리 및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 철폐
- 6) 직장가 가정의 조화증진

7.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 1) 권력 및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 강구
- 2) 여성의 정책결정에의 참여 역량 및 리더십 증진

8.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1) 여성담당기구 설치 또는 강화
- 2) 입법, 공공정책, 시책사업에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의 도입
- 3) 성별통계 및 기획평가 정보생산 및 유포

9. 여성의 인권

- 1)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관련 국제법 이행을 통한 여성의 인권증진 및 보호
- 2) 법 및 관습상 평등보장
- 3) 법률문해 달성

10. 여성과 미디어

- 1) 미디어 및 신통신기술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접근증진
- 2)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된 이미지 증진

11. 여성과 환경

- 1)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 2)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및 사업에 남녀평등적 관점 통합
- 3)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구의 강화 또는 설치

12. 여아

- 1)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 2)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와 관습타파
- 3) 여아 권리증진·보호 및 여아의 요구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 제고
- 4) 교육·훈련에 있어서의 여아차별 철폐
- 5) 보건·영양상 여아차별 철폐
- 6) 아동근로의 경제적 착취근절 및 근로소녀 보호
- 7) 여아에 대한 폭력근절
- 8)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참여에 대한 여아의 인식증대